

## 오퍼상, 무역업 창업 어떻게 하나(2)

오시학박사  
국제무역컨설팅

### 2. 무역업을 창업하려면

#### ■ 무역업은 오퍼업과 어떻게 다른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오퍼상은 본인이 직접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않고 다만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수출입 거래를 알선해 주고 수출입 거래가 성사되면 수출입 계약 당사자(수출상, 수입상 또는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금액이 크든 작든 거래상품의 종류가 많든 적든 본인명의로 본인이 자금을 투자하여(즉 본인의 책임하에) 수출 또는 수입을 하여(즉 무역을 하여) 이익이 나도 본인이 이익을 보고 손해가 나도 본인이 손해를 보는(즉 손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무역업이다.

#### 무역업과 무역대리업의 비교

구 분	무 역 업	무 역 대 리 업
개념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물품의 수출과 수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수출입거래를 알선(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업무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수입 취급품목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음</li> <li>• 수출입대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계약서(Offer Sheet)발행 : Offering Agent 역할</li> <li>•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수출품의 구매알선 : Buying Office or Merchandiser 역할</li> <li>• 수출입대행 불가능</li> </ul>
관련협회	한국무역협회(☎ 02-6000-0114)	한국무역대리점협회(☎ 02-792-1582)

#### ■ 무역업 창업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역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체로 창업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로 무역업을 창업하고자 하면 우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은 무역업을 할 사무실을 의미하며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물론 본인 소유의 사무실일 경우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법인으로 무역업을 창업할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에 앞서 먼저 관할 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기를 한 후 위의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 창업코너(2)

### ■ 자택 주거지에서는 무역업을 창업할 수 없는가

본인 소유의 사무실이 없을 경우는 무역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반드시 타인 소유의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무실을 임차할 경제적 여유가 없을 경우는 물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주거지에서도 무역업의 창업이 가능하다.

더러는 세무서 직원이 공장이나 창고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어떻게 무역업을 창업하느냐고 반문하며 무역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역업의 성격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 ■ 무역업을 창업하려면 반드시 공장이나 창고가 있어야 하나

무역업을 창업하는 데에는 공장도 사무실도 없어도 된다. 왜냐하면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성사되면 국내 생산자로부터 수출물품을 구매하여 생산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곧바로 선적하는 항구나 공항까지 운송해 해외로 보내면 되기 때문이다.

즉 무역업자에게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하청 업체인 것이다.

### ■ 무역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가

초보자가 무역업을 창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기껏해야 10만원 내외의 중고컴퓨터 한 대와 10만원 내외의 팩스 한 대만 구입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에 연결하여 전화기와 함께 사용하면 무역업을 창업할 준비는 모두 갖춘 셈이다.

물론 더러는 위장으로 무역업을 창업하여 사기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관할 세무서 직원이 무역업의 창업여건과 창업자의 창업 진의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그러므로 무역업의 창업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 직원이 창업할 사업장을 확인하고 창업진의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직원이 업무의 한계상 직접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창업 진의를 확인한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무역업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하여 어디로 가야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무역업을 창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을 하려면 우선 주민등록증과 도장(반드시 인감 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자필서명도 가능함)을 가지고 앞으로 무역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야 한다.

관할 세무서의 주로 1층에 있는 민원실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대표자 성명(동업시는 공동대표란에 동업자의 성명을 기재함) 및 주소를 기재하고, 업태란에는 도소매 그리고 종목란에는 무역업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 ■ 무역업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데에 얼마나 걸리는가

무역업을 창업하기 위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창업자의 창업여건과 창업 진의를 확인한 후 당일 신청 즉시 그 자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 확인사항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몇 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경우도 있다.

우리 경제가 불황에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양말 한 켤레라도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길 밖에 없다. 그러므로 요즈음 무역업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신청 즉시 친절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현재 무역업체는 약 8만 여 개사이다.

####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무역업을 할 수 있는가

무역업을 하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선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무역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행 규정상 무역업을 하려면 반드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 부여 받아야 하며 이 권한은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역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한국무역협회에 가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 ■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으려면 무엇을 구비하여 어디로 가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나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상 무역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한국무역협회 (지방은 한국무역협회 지부)로부터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부를 첨부하여 팩스(02-6000-5130)로 또는 방문하여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인터넷([www.kita.or.kr/guide/guide.htm](http://www.kita.or.kr/guide/guide.htm))을 통하여 받거나 한국무역 협회에 비치되어 있음]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신청 즉시 무역업고유번호부여서를 발급받게 된다. 무역업고유번호는 수출입 통계목적상 부여 받는 것으로서 수출(입)신고시 무역업 고유번호를 수출(입)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는 데에는 일체 비용이 들지 않으며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할 의무도 없다.